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2.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3.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朴禧柱 그러면 잠시 議案番號 1185番, 權寧斌委員과 金鍾雄委員, 白中元委員, 沈相一委員, 韓仁洙委員 또 李永和委員의 여러 가지 意見이 있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0分間 停會하겠습니다. 意見調整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5時 16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禧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議案番號 1185番에 대하여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에 대하여 執行部의 다음과 같이 修正案이 提出되었습니다.

修正案 內容은 條例案 第3條 中 第3項第1號의 公務員의 6人을 5人으로 하고,

同項 第2號의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中에서 7人을 8人으로 하며,

條例案 第5條 中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합니다.

第3項, 當該 紛爭事項과 利害關係가 있는 民間人 委員은 當該 事項의 審議에서 除斥한 다라고 修正한 것입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은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3항 중 1호의 공무원 등 “6인”을 “5인”으로 하고, 2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을 “8인”으로 한다.

안 제5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 분쟁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위원은 당해사항의 심의에서 제척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구 상호간 분쟁사항

<p>2.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 분쟁사항 3. 자치구 행정협의회 협의사항 조정</p> <p>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서울특별시 소속 국장급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5인 2. 지방자치단체간 분쟁발생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8인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는 회의특작성 등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행정계장이 된다.</p> <p>제 4 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우리시 공무원인 위원중 직제에 의한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5 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해 분쟁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 위원은 당해사항의 심의에서 제척한다.</p> <p>제 6 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p>	<p>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 7 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 8 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p> <p>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9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委員長 朴禧柱 委員 여러분 그리고 內務局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週 月曜日 11月 28日 10時에 民防衛局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議事日程은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34分 散會)</p>
--	---